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0 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김선교·최수진·박충권

이헌승 · 김성원 · 정연욱

구자근 · 김예지 · 김상훈

김형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음.

그러나 육아휴학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·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 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4제3호).

법률 제 호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4제3호 중 "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"를 "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육아휴학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학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의4(휴학) 학교의 장은 학	제23조의4(휴학)
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	
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	
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	
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	
학하게 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만 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	3. <u>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</u>
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	<u>학년 이하의</u>
<u>말한다)의</u> 자녀를 양육하기	
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	
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